

수원매산 A1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4.12.31.]

1. 건설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40-30번지 일원 수원매산 A1블록 행복주택 58호

-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개별 상황 등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의사소통 오류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로 인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19.9.27.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8.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수원매산 A1블록 행복주택은 『수원시 매산동 행정복지센터 복합개발사업』에 따라 건설된 **수원시 공공청사 등 복합건물* 상층부(5~12층)에 위치한 임대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31.)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행복주택(5~12층), 공공청사(2~3층), 청년인큐베이션센터(4~5층), 근린생활시설(1층)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1985.01.01~2005.12.31 출생)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3)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③ 고령자 : 65세 이상의 사람(1959.12.31 이전 출생)

④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수원매산 A1블록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를 도와 드립니다.
- **청약상담은 전용 상담전화(031-250-8140 ※ 금회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임시번호로, '25.01.22까지만 상담가능, 이후 연결불가) 및 LH 콜센터(1600-1004, 1670-0003)에서 가능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2. 공급일정

청약 신청 (PC/모바일)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당첨자 발표	계약 체결 (전자계약)
'25.01.20(월) 10:00 ~ '25.01.22(수) 18:00 ※ 24시간 신청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청약 신청내용 변경은 청약 접수기간 중 가능 (청약 마감이후 변경불가)	'25.02.06(목) 17:00 이후 (확인방법)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조회	'25.02.07(금) ~ '25.02.13(목) (서류제출방법) 등기우편 (등기우편 발송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수원매산 A1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 등기우편은 '25.02.13(목)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일반우편 접수불가	'25.05.15(목) 17:00 이후 (확인방법)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자 명단' 조회 또는 ARS(1661-7700)	'25.05.27(화) 10:00 ~ '25.05.29(목) 17:00 (전자계약)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현장계약) '25.05.27(화) 10시~16시 (12시~13시 제외) ※ LH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 청약 신청내용 변경(수정 또는 삭제)은 청약 접수기간 중 가능합니다. **[단, 1.22(수)는 18시 전까지]**
- **(현장접수)**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아래의 장소에서 청약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기간: '25.01.22(수) 10:00~16: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장소: LH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수인분당선 오리역 1번 출구)
 - 신분증,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공고문 [7. 신청서류] 참고, **서류 미지참 시 접수 불가**)
 - 현장 접수 시 혼잡이 예상되므로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합니다.
 - **현장 접수자는 별도의 서류제출 기간이 없으며,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같음합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25.02.06(목) 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서류제출대상자 및 서류제출안내문 확인 방법**
 - P C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청약』 클릭 → 『청약결과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클릭 → 『청약결과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공고문 [7. 신청서류]를 참고하셔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25.02.13(목) 우체국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함]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변경(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 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됩니다.

3.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임대대상

주택형	세대 당 계약면적(m ²)				합계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 시기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기타공용	주차장			
24A	24.54	19.2702	8.5980	11.1499	63.5581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 개별 난방	25.8월 (예정)
24B	24.99	19.6556	8.7556	11.3543	64.7555		
26AS(주거약자)	26.82	20.9470	9.3968	12.1858	69.3496		

■ 임대조건

공급 형별	공급 대상	공급호수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년)
		우선공급 (29)	일반공급 (29)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천원)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천원)	
				계	계약금	잔금					
24A	대학생	7	16	37,060	1,853	35,207	160.590	(+) 15,000 (-) 31,000	52,060 6,060	73,090 251,000	10
	청년(소득無)	8		37,060	1,853	35,207	160.590	(+) 15,000 (-) 31,000	52,060 6,060	73,090 251,000	
	청년(소득有)			39,240	1,962	37,278	170.040	(+) 17,000 (-) 32,000	56,240 7,240	70,870 263,370	
	주거급여수급자	1		-	32,700	1,635	31,065	141.700	(+) 12,000 (-) 27,000	44,700 5,700	
24B	대학생	3	7	37,740	1,887	35,853	163.540	(+) 15,000 (-) 31,000	52,740 6,740	76,040 253,950	10
	청년(소득無)	3		37,740	1,887	35,853	163.540	(+) 15,000 (-) 31,000	52,740 6,740	76,040 253,950	
	청년(소득有)			39,960	1,998	37,962	173.160	(+) 17,000 (-) 33,000	56,960 6,960	73,990 269,410	
	주거급여수급자	1		-	33,300	1,665	31,635	144.300	(+) 12,000 (-) 27,000	45,300 6,300	
26AS	고령자 (주거약자용)	6	6	45,220	2,261	42,959	195.950	(+) 20,000 (-) 37,000	65,220 8,220	79,280 303,860	20

- 수원매산 A1블록 행복주택은 『수원시 매산동 행정복지센터 복합개발사업』에 따라 노후화된 매산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신축한 공공청사 등 복합건물* 상층부에 위치한 임대주택이며, 금회 모집하는 행복주택의 동·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추첨을 실시합니다.

* 행복주택(5~12층), 공공청사(2~3층), 청년인큐베이션센터(4~5층), 근린생활시설(1층)

- 금회 공급하는 수원매산 A1블록 58호 중 1호(26AS형 우선공급 1호)는 수원매산 A1블록 내 기존거주자(철거민)에게 우선공급하며, 기존거주자(철거민) 공급신청이 미달된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4A형의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24B형의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 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24A형 대학생·청년 계층 및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남은 주택은 수요가 있는 계층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4B형 대학생·청년 계층 및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남은 주택은 수요가 있는 계층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 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 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26AS형 (주거약자용)]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으로,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 24A/B형에는 신발장, 옷장, 주방가구(상부장+하부장), 냉장고, 냉장고장, 가스쿡탑(2구)이 설치됩니다.
- 26AS형에는 신발장, 주방가구(상부장+하부장), 가스쿡탑(2구)이 설치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행복주택 거주 중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운 임대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한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25.8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단, 대학생, 청년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① 신청자 본인
- ② 신청자의 배우자
-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분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 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1주택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및 부적격 처리**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 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0.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참고)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안내**

동일한 공급유형(통합공임↔통합공임,국민↔국민,영구↔영구,행복↔행복) 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입주자 모집공고일, ②신청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4-1. 대학생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31.)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㉓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㉔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 ①-㉓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①-㉔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 단,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인	4,179,557원 이하	120%
2인	5,957,283원 이하	110%
3인	7,198,649원 이하	100%
4인	8,248,467원 이하	100%
5인	8,775,071원 이하	100%
6인	9,563,282원 이하	100%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88,211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10,0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대학생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

[가산 적용 : 출산자녀 1인 10% 가산,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구분	가산항목		최종 소득·자산 기준(한도)		
	가구원 수	출생자녀 수 (태아포함)	적용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대학생	1인	0인	120%	100,000,000원	-
	2인	0인	110%	100,000,000원	-
		1인	120%	109,000,000원	-
	3인 이상	0인	100%	100,000,000원	-
		1인	110%	109,000,000원	-
		2인 이상	120%	119,000,000원	-

※ 출산자녀는 '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가구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110%	120%
1인	-	-	4,179,557원 이하
2인	-	5,957,283원 이하	6,498,854원 이하
3인	7,198,649원 이하	7,918,514원 이하	8,638,379원 이하
4인	8,248,467원 이하	9,073,314원 이하	9,898,160원 이하
5인	8,775,071원 이하	9,652,578원 이하	10,530,085원 이하
6인	9,563,282원 이하	10,519,610원 이하	11,475,938원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88,211원을 합산하여 산정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 대학생 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은

적용 대상	비 고
• 신청자	-
• 신청자의 부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부모 제외)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 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 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상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미소유를 입주자격으로 하며,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

▶ **일반공급 경쟁 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 선정기준 : 순위 → 추천**

※ 24A/B형의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천함

■ 순위

1순위	수원시 또는 연접지역(안산시, 용인시, 의왕시, 화성시)이 거주지거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사람
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중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수원시, 안산시, 용인시, 의왕시, 화성시 이외 지역)가 거주지거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사람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31.)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자

대 학 생	수원시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사람
취업준비생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람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 공급신청자로 전환됨
(단, **우선공급자격 미충족 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처리**되므로, 반드시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자격서류의 발급가능 여부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 **우선공급 경쟁 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 선정기준 : 배점 →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추천**

■ 배점

항목	3점	1점
대 학 생	부모 모두 수원시 및 연접지역(안산시, 용인시, 의왕시, 화성시) 외에 거주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수원시 외 연접지역(안산시, 용인시, 의왕시, 화성시)에 거주 (단, 부모 모두 수원시 외에 거주해야 함)
취업준비생	수원시에 3년 이상 거주	수원시에 3년 미만 거주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4-2. 청년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31.)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㉓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㉒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①-㉓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5.01.01~2005.12.31) ①-㉒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1인	4,179,557원 이하	120%
	2인	5,957,283원 이하	110%
	3인	7,198,649원 이하	100%
	4인	8,248,467원 이하	100%
	5인	8,775,071원 이하	100%
	6인	9,563,282원 이하	100%
세대원(본인)	1인	4,179,557원 이하	120%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88,211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7,3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 원 이하
-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청년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

【가산 적용 : 출산자녀 1인 10% 가산,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구분	가구원 수	출생자녀 수 (태아포함)	최종 소득·자산 기준(한도)		
			적용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1인	0인	120%	273,000,000원	37,080,000원
		0인	110%	273,000,000원	37,080,000원
	3인 이상	1인	120%	300,000,000원	40,790,000원
		0인	100%	273,000,000원	37,080,000원
		1인	110%	300,000,000원	40,790,000원
		2인 이상	120%	328,000,000원	44,500,000원
세대원(본인)	1인	0인	120%	273,000,000원	37,080,000원
		0인	110%	273,000,000원	37,080,000원
	3인 이상	1인	120%	300,000,000원	40,790,000원
		0인	100%	273,000,000원	37,080,000원
		1인	110%	300,000,000원	40,790,000원
		2인 이상	120%	328,000,000원	44,500,000원

※ 출산자녀는 '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가구원 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110%	120%
1인	-	-	4,179,557원 이하
2인	-	5,957,283원 이하	6,498,854원 이하
3인	7,198,649원 이하	7,918,514원 이하	8,638,379원 이하
4인	8,248,467원 이하	9,073,314원 이하	9,898,160원 이하
5인	8,775,071원 이하	9,652,578원 이하	10,530,085원 이하
6인	9,563,282원 이하	10,519,610원 이하	11,475,938원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88,211원을 합산하여 산정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면적 대학생 계층의 임대조건이 적용됨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 ※ ①-④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 ①-④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 ①-④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함
- ※ **청년 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구분(신청자 기준)	해당세대	비 고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 신청자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세대원이거나 단독세대주	• 신청자	-

▶ **일반공급 경쟁 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 24A/B형의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 **순위**

1순위	수원시 또는 연접지역(안산시, 용인시, 의왕시, 화성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중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수원시, 안산시, 용인시, 의왕시, 화성시 이외 지역)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31.)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수원시가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단, **우선공급자격 미충족 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처리**되므로, 반드시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자격서류의 발급가능 여부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우선공급 경쟁 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 선정기준 : 배점 →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수원시에 3년 이상 거주	수원시에 3년 미만 거주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 신청 시 청약저축 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 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저축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가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이며,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납입 회차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 주택명 : 수원매산 A1블록 행복주택, 주택관리번호 : 2024-000734]

인 터 넷 직접 발급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접속 → 화면 중앙의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선택 → '발급' 선택 → '순위확인서 발급하기' 선택 → [일반공급용] 선택 → 동의하기 → 공동인증서 본인 확인 → 청약신청 주택명 선택 → 발급신청 후 내역 확인
은행 방문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신청 → 발급내역 확인

4-3. 고령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3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65세 이상인 자

-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인	4,179,557원 이하	120%
2인	5,957,283원 이하	110%
3인	7,198,649원 이하	100%
4인	8,248,467원 이하	100%
5인	8,775,071원 이하	100%
6인	9,563,282원 이하	100%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88,211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34,5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 원 이하

《 고령자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
 【가산 적용 : 출산자녀 1인 10% 가산,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구분	가구원 수	출생자녀 수 (태아포함)	최종 소득·자산 기준(한도)		
			적용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고령자	1인	0인	120%	345,000,000원	37,080,000원
	2인	0인	110%	345,000,000원	37,080,000원
		1인	120%	380,000,000원	40,790,000원
	3인 이상	0인	100%	345,000,000원	37,080,000원
		1인	110%	380,000,000원	40,790,000원
		2인 이상	120%	414,000,000원	44,500,000원

※ 출산자녀는 '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가구원 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110%	120%
1인	-	-	4,189,557원 이하
2인	-	5,957,283원 이하	6,498,854원 이하
3인	7,198,649원 이하	7,918,514원 이하	8,638,379원 이하
4인	8,248,467원 이하	9,073,314원 이하	9,898,160원 이하
5인	8,775,071원 이하	9,652,578원 이하	10,530,085원 이하
6인	9,563,282원 이하	10,519,610원 이하	11,475,938원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88,211원을 합산하여 산정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고령자 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적용 대상	비고
• 신청자 본인	-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일반공급 경쟁 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 선정기준 :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31.)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수원시에 신청자 본인이 거주하는 사람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단, **우선공급자격 미충족 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처리**되므로, 반드시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자격서류의 발급가능 여부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 **우선공급 경쟁 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 선정기준 : 배점 → 수원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 **배점**

항목	3점	2점	1점
① 신청자 나이	75세 이상	70세 이상 ~ 75세 미만	70세 미만 ~ 65세 이상
② 거주지 및 거주기간	수원시에 5년 이상 거주	-	수원시에 5년 미만 거주
③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14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3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4-4.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3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적용 대상	비고
• 신청자 본인	-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일반공급 경쟁 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 선정기준 : 추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31.)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수원시에 신청자 본인이 거주하는 사람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단, 우선공급자격 미충족 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처리되므로, 반드시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자격서류의 발급가능 여부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 우선공급 경쟁 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 선정기준 : 배점 → 수원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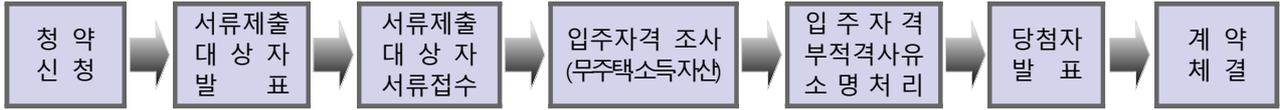
■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수원시에 5년 이상 거주	수원시에 5년 미만 거주
②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장애인,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 : 3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5. 입주자 선정절차 및 청약 신청방법

■ 입주자 선정절차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 구성원 전체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안내사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연계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청 유의사항 (**신청 전 반드시 읽어보셔야 합니다.**)

-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및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에 필요한 **청약은행, 신청순위 및 배점, 신청자의 해당서류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역 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 시 공고일(2024.12.31.) 기준 **수원시** 거주 시에는 해당주택 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표등본상 **수원시**에서 거주를 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계속 거주 기간만 인정**)

■ 인터넷(PC) 청약신청 방법

[청약기간: '25.01.20(월) 10:00 ~ 01.22(수) 18:00]

■ 신청방법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준비 → LH청약플러스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①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청약플러스 접속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로그인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클릭

③ 인터넷신청



■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 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25.01.20(월) 10:00 ~ 01.22(수) 18: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 내용 변경(수정 또는 삭제)은 청약 접수기간 동안 가능합니다. [단, 1.22(수)는 18시 전까지]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하신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해당 신청일이 지난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 청약신청 방법

[청약기간: '25.01.20(월) 10:00 ~ 01.22(수) 18:00]

■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어플 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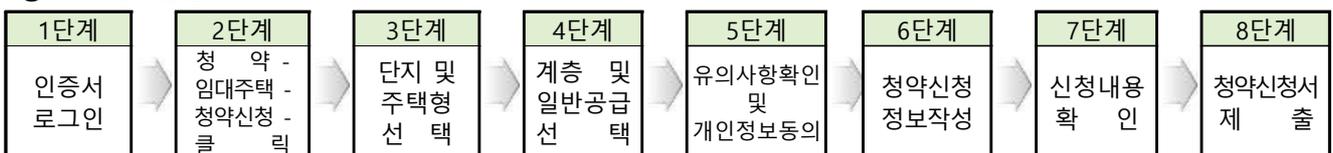
①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어플 설치

- IOS폰 이용고객 → App스토어에서 앱 다운
- ANDROID폰 이용고객 → Play스토어에서 앱 다운

②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공동인증서 설치 또는 민간인증서 발급)

-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가 설치되어있거나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연습하기 → 공동인증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모바일 신청



■ 유의사항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청약플러스 앱(App)의 '인터넷청약 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모바일청약건을 PC에서 수정·취소가 가능하며, PC에서 청약한건을 모바일에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25.01.20(월) 10:00 ~ 01.22(수) 18: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 내용 변경(수정 또는 삭제)은 청약 접수기간 동안 가능합니다. [단, 1.22(수)는 18시 전까지]
- 청약신청, 당첨자 확인, 계약내역 조회, 보증금 납부내역 조회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 환경에서 청약하시면 데이터 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청약신청 방법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에 한함)

기 간	'25.01.22(수) 10:00 ~ 16: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약 도	
장 소	LH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대 중 교통편	(지하철) 수인분당선 오리역 1번 출구(도보 5분 거리) (버 스) 오리역 하차 - 일반버스 : 60, 101, 116-3, 300, 390, 520, 700-2, 720-1A, 720-2, 820 - 간선버스 : 102, 1101, 1241, 1303, 3500, 7007-1, 8100, 8106, 8109, 9000-1		
구 비 서류	<input type="checkbox"/> 아래 서류와 [7.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미지참 시 접수 불가). • 본 인 신청 시 : 본인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 시 :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 도장, 본인과의 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그 외의 자 신청 시(예비배우자 포함) :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별지3호 공사양식, 인감증명서 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별지3호 공사양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발급분)		
<input type="checkbox"/> 현장접수 시 혼잡이 예상되므로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반드시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7. 신청서류] 참고)			

6. 인터넷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인터넷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5.02.06.(목) 17:00 이후**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 P C : LH청약플러스 → 『청약』 클릭 → 『청약결과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청약결과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서류제출 방법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등기우편으로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 서류제출기간 : **2025.02.07(금) ~ 02.13(목)** [25.02.13(목)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 됨]
- * 서류제출방법 : **등기우편으로 제출 (등기우편 외 방법은 모두 접수 불가)**
- * 제출서류 : 공고문 [7. 신청서류] 및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될 서류제출안내문을 확인하여 제출
- * 우편발송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수원매산 A1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우편번호 13637), **봉투 겉면에 "이름, 접수번호, 신청형" 반드시 기재**

7.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4.12.31.)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12.31.)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기관 문의 후 미리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예시) 123456-1234567 (O), 123456-1***** (X)

※ 서류 제출시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기한 내에 제출** (현장청약 접수자의 경우 현장방문시 제출)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현장방문 청약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추가 구비(제출)서류(PC·모바일 신청자는 해당사항 없음)

※ **65세 이상 등 현장에서 청약접수를 희망하실 경우 기본서류와 더불어 아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여 청약장소로 내방**

구 분	구비서류
본인이 직접 방문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방문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방문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위임장(별지3호 공사양식), 인감증명서

	<p>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p> <p>*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p> <p>② (본인서명방식)</p> <p>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발급분),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별지3호 공사양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p> <p>*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p> <p>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p>
--	---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청약신청시점에 제출**

구비서류	비 고	부수
신청자 전원 필수 제출	<p>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발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p>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발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1통 추가 제출 	1통
	<p>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확인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방법) 내용 확인 후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별지 1-1호)
	<p>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작성 제외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각 1통 (별지 1-2,1-4호)
	<p>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p>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작성 제외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불필요 ※ 확정일자 대신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으로 갈음하여 제출 가능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 (주의)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별지 1-3호)
해당자 제출	<p>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거소사실증명서) 등 추가 제출 	1통

		• 출생 또는 입양자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받으려는 경우 (출생 신고 전일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거소사실증명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1통
	임신진단서/ 입양관계증명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태아 또는 입양자가 있어 소득·자산 기준을 상향하여 인정받으려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혹은 입양관계증명서 제출	1통
	기타서류	• 그 밖에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 1통

■ 공급대상자(계층)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구비서류	발급처	
대학 생 계 층	대학생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졸업예정증명서	해당 대학 별지 2호 해당 대학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해당 학교
	해당자만 제 출	•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청 년 계 층	청년 (19세 이상 ~ 39세 이하)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지방고용노동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자만 제 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 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 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사람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가 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시 청약통장 사본 제출(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해당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공급신청 시 청약저축 납입횟수 배점(②)을 받고자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청약신청 주택명 : 수원매산 A1블록 행복주택, 주택관리번호 : 2024-000734]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또는 가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공급신청 시 장애인 등 배점(③)을 받고자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 전 등록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 이후 등록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애등급 1~14급자 :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행정복지센터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필수 제출) 	행정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공급 신청 시 국가유공자 등 배점(②)을 받고자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 전 등록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 이후 등록자) - 5.18민주화유공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8.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2025.05.15(목) 17: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합니다.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 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자조회』 클릭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클릭

■ 계약안내 ('전자계약' 또는 '현장계약' 중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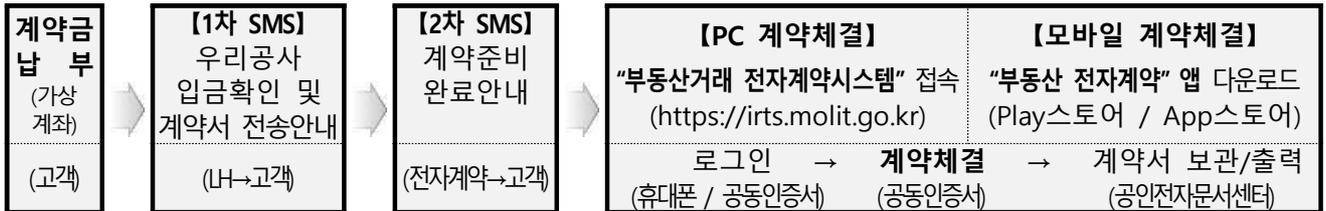
※ **현장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가급적 전자계약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입금계좌 및 계약 상세절차 등)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혹은 예비자 선정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안내 예정)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통합공임·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2025. 5. 27(화) 10:00 ~ 5. 29(목) 17: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 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계약체결 절차】



-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합니다.
- ※ 「1차 SMS」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안내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1차 SMS」는 청약신청 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 「PC 계약체결 또는 모바일 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하여야 합니다.
-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합니다.

□ **현장계약 체결 [2025. 5. 27(화) 10:00 ~ 16:00]**

- 계약장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LH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 및 **미성년자**에 한하여 현장계약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공통서류(본인 + 대리인 계약 시 모두 지참)	대리인 계약 시 추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 가능) • 계약자 신분증 지참 및 사본 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가 대리계약 시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가 대리 계약 시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양식), 당첨자 인감도장,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당첨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발급분), 당첨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9.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예수금 : 잔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액 -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총 자산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 연금급여,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 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선박·항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직권조사 등록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10.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p>■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border="1" data-bbox="280 443 1434 562"> <thead> <tr> <th>입주자격</th> <th>최대 거주기간</th> </tr> </thead> <tbody> <tr> <td>대학생, 청년 계층</td> <td>10년</td> </tr> <tr> <td>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td> <td>20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행복주택 입주자는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동일 면적형의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할 경우 변경하여 갱신) 대학생 등(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p>■ 재청약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예비 입주자	<p>■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셔야 하며, 변경 미통보에 따른 손해책임은 공사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등록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4년의 경우 3,708만 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 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갱신계약 등	<p>■ 갱신계약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신청자격 중 아래의 요건은 갱신계약 시 다시 확인하지 않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19세 이상 39세 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p>■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table border="1" data-bbox="271 392 1444 571"> <thead> <tr> <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 비율</th> <th colspan="2">할증비율</th> </tr> <tr> <th>최초 갱신계약 시</th> <th>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th> </tr> </thead> <tbody> <tr> <td>10%이하</td> <td>110%</td> <td>120%</td> </tr> <tr> <td>10%초과 30%이하</td> <td>120%</td> <td>130%</td> </tr> <tr> <td>30%초과</td> <td>130%</td> <td>14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 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입주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의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신청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 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 관련 서류를 														

	<p>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입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보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19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전세보증금 대출 가능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지역특화센터 및 소규모 행복주택 혼합단지로서, 건물특성상 관리비가 타 단지보다 높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지구 및 단지 특성	<p>■ 지구 내 · 외부 여건(지구 내 또는 지구 인근의 혐오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지구는 수원시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동쪽으로는 영통구, 서쪽으로는 권선구, 북쪽으로 장안구와 접하고 있습니다. • 당해 지구는 행정구역상 경기도 수원시 매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으로는 향교로, 남측으로 매산로가 인접하고 있습니다. • 지구 서측에는 수원역(1호선,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교통의 요지로 출퇴근이나 외출이 용이하며, 인근에 영화관, 편의점 병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어 청년을 위한 생활여건이 우수합니다. • 지구 남측에는 매산로가 위치하여 교통문제, 분진 및 소음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지구 동측에는 수원세무서가 있고, 서측 방향으로는 로데오 거리에 음식점 및 주점이 밀집되어 있어 생활여건시설이 유용하나 야간에 소음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구가 위치한 팔달구에는 역사적 명소와 문화시설이 풍부해 문화생활을 즐기기에 좋은 지역입니다. • 당해 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반드시 지구 내·외부 여건 및 단지 내·외부 여건(당해 구역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묘지, 혐오시설, 저류시설 등 주위 환경)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p>■ 단지 외부 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외부 인도 및 식수대 인근에 한전 전력기기(지중개폐기 및 변압기) 등의 노상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 주변 한전 가공전주 및 가공통신선로가 설치(이설 및 철거 없이 존치예정)되어 있어 세대미관, 조망 등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 전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해당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체결 후에는 해당 사유로 계약해지 및 위약금 면제 등이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단지 내부 여건

- 본 건축물은 수원시 공공(행정)업무시설과 행복주택이 복합된 건축물로서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 등의 운영·관리 기준(통합 운영·관리 등)은 추후 수원시와 LH가 협의 약정한 바에 따릅니다.
- 본 건물 내 각종 인입(상·하수, 도시가스, 한전 등)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방안은 실입주 후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 본 건물 1~5층은 수원시 공공행정시설로, 행사 등의 이유로 공용구간을 입주자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행정시설(1층~5층) 등을 이용하는 사용자로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공행정시설(1층~5층) 정면부에 벽면 일체형 태양광(BIPV) 발전설비 및 모듈이 설치되며 빛의 산란 등에 의해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출입구, 공용 시설물 및 근린생활시설(상가) 등에 인접한 세대는 불빛,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3 인근에 아파트 및 상가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전력기기(지중 개폐기 및 변압기)와 맨홀이 단지 내 설치되며, 일부 인접 상가동 및 세대의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일부 도로는 보·차도 혼합블록으로 설치되어 차량 이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로의 정차 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최고 층수는 해당 동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행복주택(5~12층)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벽식구조입니다.
- 지붕은 평지붕입니다.
- 문주는 설치하지 않을 예정이며, 추가 설치 불가하며 이로 인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인접 건물에 의하여 일부 세대의 조망권 및 일조량이 저감될 수 있습니다.
- 주거동, 공용시설물 등으로 일조, 조망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도, 조경, 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단지 주·부출입구,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차량소음, 출차주의 경보음 등) 등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으므로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 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가 세대 내외 및 PIT층, 지하주차장에 설치됩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환기설비 및 제습기의 가동으로 전기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단지 내 지하 기계실, 저수조실, 전기실 등에 배수펌프, 급수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어 장비류 가동 시 일부 세대에 소음, 분진, 진동, 환기 등이 세대로 영향(전달)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지하저수조, 기계실, 전기실의 환기를 위한 팬룸과 팬룸 상부의 환기탑에 따른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지역특화센터 및 행복주택 혼합단지로 지상 차량진출입구는 본 단지 이용자 전체(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지역특화센터 및 행복주택)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하3층 일부 주차장은 단지 외 지역특화센터(청년인큐베이션센터) 이용자와 함께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진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각 1개소가 설치됩니다. 행복주택 및 행정복지센터의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동일하여 입·출차 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차단기는 지상1층(공용) 주차장 출입구, 지하주차장 출입구, 지하2층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될 예정이며, 전체 주차공간(49대) 중 행복주택 입주자는 지하3층(14대) 주차공간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지하1층~지하2층은 공공청사 등 이용객 전용 주차공간이며, 해당구역에 주차 시 주차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지자체 등 협의내용, 계획여건에 따라 주차위치 및 주차대수, 차단기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5층에서 12층까지 각 층 공용부 복도에 행복주택 세대출입을 위한 출입문 및 출입통제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음, 출차주의 등 경보음 및 차량전조등으로 인해 주출입구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서는 이에 따른 이익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중 지하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 높이는 2.7m입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내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4항 제5항 및 제16조)
-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설비는 총 3대[공공청사 완속충전기 2대(각 7kW), 행복주택 완속충전기 1대(7kW)]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충족하도록 설치됩니다.(전기차 충전설비의 기존 설치위치 이동 및 추가 설치는 불가함)
-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출차 경고등이 설치되어 저층 세대의 경우 소리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유도등 등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주거동 지붕층 및 옥탑층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되며 태양광 모듈의 빛 산란에 따라 일부 세대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 전기실, 발전기실 정화조, 저수조, 펌프실 등 공용시설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전기실, 발전기실 상부 환기구(D.A.) 설치 위치에 따라 장비류 가동 시 세대별로 소음, 진동, 열풍, 분진, 매연 등으로 인해 일부 세대와 보행자 통로 주변으로 전달되어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해제, 해지, 하자 보수 등 민원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위치를 확인 후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위치는 팸플릿 단지배치도 참고)
- 승강로 및 승강기 기계실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승강기의 경우 근린생활시설(1층), 공공청사(2~3층), 지역특화센터(4~5층), 행복주택(5~12층)에 모두 연결되어 운행이 가능하게 되어있으나, 행복주택 외 시설(1~5층)에 대한 승강기 운영사항(승강기 전기요금, 법적 검사비용, 유지관리비용 등)에 대하여 수원시, 행복주택 임차인대표회의 및 행복주택 관리주체(LH 및 관리사무소 등)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 승강기 설치 인승, 속도 적용기준은 관련 법률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세대 조합별 운행층수에 의한 규격으로 적용 설치될 계획입니다.
- 무인택배보관함은 지상1층 주출입구 인근 복도에 설치 예정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CCTV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설치됩니다.
- 도난이나 기물파손 및 범죄예방을 위한 단지 내 CCTV 설치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상 1층에 MDF실이, 지하1층에 관리사무소 및 방재실이 위치합니다.
- 주거동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난간, 태양광 설비 등 구조물(시설물)로 인해 강풍 및 우천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지붕층 바닥(8호 라인쪽)에 지상파(디지털) 공청안테나 및 무궁화 위성안테나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 변경은 불가하오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위치는 팸플릿 단지조감도 및 동호배치도 참고)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 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단지 내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장치는 지하1층 EPS/TPS실, 서비스 안테나는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1 인근 건축물 외벽에 설치될 예정이고, 본 공사 시 현장여건 및 이동통신사 사정에 따라 설치위치 및 수량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옥탑층 및 지붕층에 피뢰침 또는 피뢰보호 설비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일부구간(옆 건물 인접구간)에는 담장이 설치될 예정이오며, 현장여건에 따라 담장의 재질 및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관련 유의사항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색채계획 및 마감재는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 과정에서 오류, 오기, 오탈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 하신 후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 및 평면 배치, 기타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분들의 개별 요청에 의해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주거동 및 그 외 시설물의 외벽체 문양과 색상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 내부의 물딩 등의 설치에 따라 층별, 호별, 입면의 돌출 정도에 차이가 있고, 강우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 타입별 빌트인 항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은 조립식욕실(UBR)로 시공됩니다.
- 세대 내 실내환기는 제1종 환기방식(강제급배기)을 적용하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저는 거실과 침실 등 천장에 설치됩니다.
- 세대 내 실내환기설비는 작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배기는 옥상에 배기팬이 설치되고, 세대 렌지후드에는 팬이 설치되지 않고 댐퍼만 설치되는 공용배기방식을 적용합니다.
- 주방가구 중 싱크대 하부는 위생설비인 급수, 급탕분배기 및 주위배관, 싱크배수구 등이 설치되므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하며, 싱크배수구 위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자동식소화기, 렌지후드, 배기덕트 등으로 인해 주방 상부장 일부가 조정되어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경우 공용배기방식의 환기팬(주방 환기용) 및 무동력 흡출기(욕실 환기용)가 인접해 있어 소음, 진동,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천장 내부는 직상층 세대 화장실의 배관이 통과하므로 소음이 있을 수 있으며, 천장에는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일부 발코니에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홍통의 위치와 개수는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세대 환기용 유니트 및 덕트 등이 천장에 설치되며, 환기용 유니트와 덕트는 노출 시공됩니다.
- 소방 관련법에 따른 완강기가 설치되는 세대[5~10층(601호, 602호 제외)] 발코니의 경우 해당 공간의 창호 형태 및 문의 재질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통합관리반(전기·통신)이 현관 복도 벽체에 매립 설치되고, 노출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위치는 팸플릿 세대 아이소 참고)
- 팸플릿 등에 적용된 자재 중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나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마감재 역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유사색상 및 무늬를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반침가구, 조명기구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이 사용될 예정이며, 팸플릿에는 유사 이미지를 구현한 것으로 실제 설치 시 선정된 업체에 따라 디자인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비디오폰 및 배선기구류, 세대통합관리반(전기·통신) 등의 설치위치, 사양 및 수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전기콘센트 및 스위치의 설치위치 및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조명은 모두 LED램프가 적용됩니다.
- 세대 내 일괄소등 스위치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모든 타입에 주방 조리대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거약자형 욕실에는 비상연락장치(비상콜)가 설치됩니다.
- 「주거약자지원법」 제9조 및 시행령 4조에 의거, 주거약자세대에 한해서 동체감지기가 설치됩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전기콘센트 및 스위치의 설치위치 및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일반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스피커는 천정형과 벽부형(최상층)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의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누전 및 콘센트, 스위치, 조명기구 등의 임의 위치 이동 등)
- 본 행복주택은 초고속정보통신 1등급 인증 건물입니다.

■ 초·중·고등학교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

- 교육정책 및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학생 배치계획 변동요인(학급당 학생수 기준, 통학구역 및 학군, 인근 개발계획 등의 수립·조정 등) 발생 시 주변 여건 변화 등에 따라 학생배치계획(학교설립, 학급당 학생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아의 경우, 동부2권역 내 유아배치시설(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배치가 가능합니다.
-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매산초등학교입니다.
- 중학교는 북부중학군1구역(매향중, 삼일중, 송원중, 수성중, 수원북중, 수원제일중, 수일여중, 수일중, 숙지중, 영복여중, 조원중)에 해당됩니다.
- 고등학교는 관내 기존학교에 배치 가능하며, 수원 관내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포함)는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의거 평준화 지역 배정 방법을 따릅니다.

11.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주택법」 제39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에 의거, 5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해당사항 없음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 여부	구 분	적용 여부
측벽	적용	바닥(층간바닥)	적용
외벽(직접면)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외벽(간접면)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미적용
창호(직접면)	적용	LED조명	적용
창호(간접면)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지붕	적용	절수설비	적용
바닥(직접면)	적용	고효율설비	적용
바닥(간접면)	적용		

* 적용/미적용 여부 표기

12.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A1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원종합개발(주)	-	(주)디엠이엔지종합 건축사사무소

1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의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 대상자에 따른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25.05.27(화)~05.29(목)] 단, 공정진행 정도에 따라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또는 별지 4호 공사양식 참고
- ▶ 신청 시 필요서류 :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수첩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 전자계약 체결하시는 분 중 편의증진시설 설치 해당세대인 경우 신청서 및 신청자격 서류를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함 [우체국 소인이 '25.05.29(목) 이내여야 함]

* (발송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LH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수원매산 A1블록 행복 주택 담당자 앞"

■ 주거약자용 주택(26AS형) 편의시설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을 중복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경사로) 마루귀틀에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거실	(비디오폰) 바닥에서 1.2m 이내	주거약자 전체 청각장애인
	(시각경보기) 세대별로 설치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부엌	(좌식싱크대) 설치	주거약자 전체
욕실	(세면기) 높낮이 조절용 설치 (수건걸이) 1.0~1.2m 높이로 조정	
침실	(조명밝기) 300~400럭스(lux)	청각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26AS형)에는 [현관] 출입구 폭 규격확대, 현관센서등, 안전손잡이, [거실] 동체감지기, 비상연락장치(비디오폰), [욕실] 미닫이문, 동작감지센서등, 안전손잡이, 비상연락장치(비상콜)가 기적용되어 있습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24A/B형 주택에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신청 불가

- 상이 3급 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애 3급 이상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욕실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cm 이상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주방	좌식 싱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거실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비디오폰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문의처	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상담 : 031-250-8140 (※ 임시번호로 '25.01.22까지만 상담가능, 이후 연결불가) • 콜 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1670-0003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인터넷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
당첨 ARS	☎ ARS(☎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 (www.lh.or.kr) 고객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3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